신한카드 전세대출 [신청] 약정서 [고객 用]

▶ 대출조건

대출금액	금 원정 (₩)	대출이율	☐ 변동(3개월) : 기준금리(COFIX) + ( )% ☐ 고정 : ( )%
대출만기	임대차계약 종료일	자금사용용도	☐ 임차자금 ☐ 생활자금 ☐ 기타 ( )
상환방법	☐ 만기일시 ☐ 원금균등 ☐ 원리금균등 ☐ 기타 ( )		
중도상환 수수료율	☐ 만기 1년 이상 대출 : 「중도상환원금 ×1%(부대비용)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 1%) × 잔존기간/(대출기간 – 30일)」 ☐ 만기 1년 미만 대출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존기간/(대출기간 – 30일)」 * 30일 미만 상환 시 '대출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합니다.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 ※ 법정 최고금리(24%) 이내		

거래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명		결제일	

뒷면의 자동이체 약관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의 각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본 계약서 사본 및 약관을 교부 받았습니다.
2. 본 전세대출[신청]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첨부되는 신용[전세]대출 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3. 본 약정서의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귀사가 대출승인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약정서의 접수가 대출의 시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개별심사결과에 따른 대출여부 권한은 귀사에 있음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기재내용 중 본인의 자필 기재가 요구되는 부분을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밖의 내용 중 본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동의 하에 귀사가 보충 기재하는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귀사가 보충한 부분은 물론 본인이 자필로 기재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오기로써 본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귀사가 정정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귀사가 이를 정정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인/서명

신한카드

신한카드 신용(전세)대출 약관 (고객 用)

(약관 사후보고일자 : 2018.05.09)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신한카드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간의 대출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대출조건]
'채무자'의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조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하며, '금융회사'는 이를 대출실행 이전에 '채무자'에게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 3조 [대출의 실행]
①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가 지정한 대출실행 계좌(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합니다)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대출금액, 만기, 대출금리 수준 등 대출실행내역(신규, 만기연장, 대환)을 SMS, 이메일, 우편 등 차주가 선택한 수단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③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대출금액에서 제 6조 제 2항에 따른 채무자 부담의 인지세를 입금 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① '채무자'는 제 2조에서 정한 율에 의한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첫 회 납입일은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와 협의하여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월납입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②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지급하기로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약정금리+ 최대3%, 법정 최고금리 이내)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연체발생 시점 대부이자율이 없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높은 금리를 대부이자율로 적용합니다.
가.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나.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③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금융회사'는 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연장 시(대환포함)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만기연장 전에 SMS, 이메일, 우편 등 차주가 선택한 수단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 5조 [금리인하요구권]
① 제 4조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 등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시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6조 [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서, 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기타 법령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4조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7조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 8조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① '채무자'는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 대출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 9조 [결제방법]
① '금융회사'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② 제 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채무자'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③ 제 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 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추가대출]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융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채무자'는 추가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의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금, 대출기간, 수수료, 상환방식 등)은 추가대출 시점에 결정되며, 그 외 약정사항은 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추가대출 당시의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 11조 [변경사항의 통지 의무]
① '채무자'는 대출 약정서 상의 기재사항(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즉시 변경사항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약정서 상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 12조 [채권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 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유효기간]
이 약관은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관과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합니다.

제 14조 [관할 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5조 [해석]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 자동이체 약관

1. 신청인 및 예금주(이하 "고객"이라 합니다.)는 약정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신한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보유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합니다.)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처리 되며, 금융기관의 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3.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일 현재 회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 순위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자동이체 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며, 자동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납부자의 사정으로 예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자동납부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자동납부(해지)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8.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납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남대문세무서장
후납승인
07년 03호

■ **대출금액 구간별 인지세**
- 5천만원 이하 : 면제
- 1억원 이하 : 7만원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